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나2269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나2269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가소1270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개명 전: B)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구진

변론종결 2024. 3. 8.

판결선고 2024. 4. 19.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가소12706 판결

주문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2024. 4. 1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히트펌프 및 전기 공사, 배관 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사업자금과 부채 변제에 필요한 대출을 받고자 하던 중 2013. 2.경 피고를 소개 받아 피고로부터 히트펌프 보일러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3. 4. 17.경 D와 히트펌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4. 원고의 배우자인 E 명의로 주식회사 F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의 배우자인 G 계좌로 대출금에 대한 보증금 2,000만 원,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히트펌프 보일러 구매계약 후 대출을 받으려면 H에 대출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H의 대출업무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라는 에이전시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는 2013. 4. 25. I 이사인 J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J은 피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받은 후 H에 서류를 제출하고 2개월에 걸쳐 서류를 보강하였음에도 대출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후 J은 위 보증금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하자 2013. 8. 26. 원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계약일(2013. 4. 17.)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3. 5.경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직원을 상대로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작업비를 마련하자고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5. 23.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가 지정하는 K(피고가 당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L의 언니임) 계좌로 650만 원을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이체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 500만 원을 포함한 7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나머지 2,450만 원(=2,500만 원 + 650만 원 - 7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4. 1. 3. 피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2013. 4. 24. 받은 보증금 2,000만 원, 수수료 500만 원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3. 5. 23. 받은 대출작업비 650만 원(위 돈들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으면서 또는 그 이후에 2013. 10. 18.까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그중 일부인 700만 원을 반환한 것이고 원고로부터 2013. 10. 18. 반환을 독촉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약정에 따라 2,4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인데 위 지급 당시 피고는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대출 알선 약정의 당초 목적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달성되지 않았다. 2013. 4. 24. 자 보증금 2,000만 원의 경우 실제 사용자가 M이었다고 하더라도 급부관계 상대방이 피고에서 M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이익은 여전히 피고에게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2013. 5. 23. 자 대출작업비 650만 원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급부로서 L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4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에 대하여 반환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 2) 피고는 원고의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보증금 2,000만 원을 I의 이사인 M에게 지급하였고, M도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위 2,000만 원의 반환 주체는 피고가 아닌 M이다.
- 3) 피고는 M의 대출승인이 불가능해진 후 원고에게 2013. 4. 24. 자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 500만 원과 2013. 5. 23. 자 대출작업비 650만 원 중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반환하였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반환약정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으면서 또는 그 이후에 2013. 10. 18.까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 1) 2013. 4. 24. 자 보증금 2,000만 원, 수수료 500만 원 부분
-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히트펌프 보일러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2013. 4. 24.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I 이사인 J이 2개월에 걸쳐 원고 관련 서류를 보강하였음에도 H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가 위 2,500만 원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당시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 대출 알선 약정의 당초 목적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음에도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 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는데, 피고는 원고와의 대출 알선 약정에 따라 2013. 4. 25. J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J이 2013. 8. 26.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 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2,000만 원은 피고가 아닌 J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 5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반환하였으므로, 피고가 대출 알선 약정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대출작업비 650만 원 부분

가) 원고는 2013. 5. 23. 피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명목으로 K 계좌에 대출작업비 6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는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 K는 피고의 채권자인 L의 언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대출을 알선하여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65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채권자인 L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고, 원고로부터 이를 받을 당시부터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작업비 650만 원 중 이미 변제한 20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작업비를 지급한 2013. 5. 23.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3. 10.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규설, 판사 이영풍, 판사 하헌우